

2026 원주그림책 페스티벌 기획·운영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

2026. 4.



원주시
문화예술과

I 과 업 개 요

1. 과업개요

- 가. 과 업 명: 2026 원주그림책페스티벌 기획·운영 대행 용역
- 나. 과업기간: 계약체결일~2026. 12. 15. (*결과보고 및 정산기간포함)
☑ 본 행사기간: 2026. 11. 3. (화)~ 11. 30.(월)/개막식: 2026. 11. 6. (금) *설치 및 철거 기간 포함
- 다. 장소: 원주시 일원(남산골문화센터 등)
- 라. 대상: 원주 시민 및 국내·외 관광객
- 마. 주최/주관: 원주시
- 바. 사업비: 금200,000,000원(금이억원)(부가가치세 및 대행료 포함)

2. 과업목적

- 가. 그림책을 주제로 한 복합 문화축제 개최를 통하여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
- 나.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원주의 브랜드 가치 제고
- 다. 지역 문화·관광 활성화 및 그림책 도시 이미지 강화

II 과 업 수 행 범 위

1. 과업 범위

- 본 용역은 「2026 원주그림책페스티벌」의 기획,제작,운영, 홍보, 정산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종합 대행을 포함한다.
- ※ 세부 과업내역은 최종 계약체결(협상) 시 조정될 수 있음

2. 주요 과업 내용

- 가. 종합 기획 및 운영관리
 - 행사 기본 콘셉트 및 추진 전략 수립

-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일정 계획 수립
-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사업 총괄 관리
- 유관 기관 및 협력 단체 협업 관리
- 발주처 요구사항 반영 및 행정 지원 수행
- ‘그림책 도시’, ‘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’ 원주 정체성 반영 기획

나. 전시 프로그램 기획·운영

- 그림책 주제 전시 기획 및 콘텐츠 구성
- 국내·외 작가 섭외 및 전시 구성
- 전시 공간 연출 및 동선 설계
- 전시물 제작·설치(인쇄물, 영상, 조형물 등)
- 체험형 전시, 미디어아트, 포토존 등 조성
- 저작권 협의 및 사용료 지급
- 도슨트 운영 및 전시 인력 배치
- 전시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

다. 체험·교육 및 부대 프로그램 운영

-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작가와의 만남, 강연,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
- 원주시 특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구성
- 사전접수 및 현장 운영 관리

라. 홍보 및 마케팅

- 온·오프라인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
- 홍보물 제작(포스터, 리플릿, 현수막 등)
- SNS 및 온라인 홍보 운영
- 언론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

마. 현장 운영 및 안전 관리

- 행사장 조성 및 운영 인력 배치
- 관람객 동선 및 현장 운영 관리
-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비상 대응체계 구축
- 안전요원 배치 및 보험 가입

바. 성과관리 및 결과 보고

- 관람객 통계 및 만족도 조사
- 프로그램별 사진, 영상 등 현장 기록
- 행사 결과 분석 및 평가
- 정산 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
- 향후 발전 방안 제안

3. 과업 수행 조건

가. 본 과업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기획하여야 한다.

나. ‘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’ 및 ‘그림책 도시’로서의 원주시 정체성을 반영하여야 한다.

다. 지역 예술인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라. 창의성, 실행 가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4. 안전 및 법적 준수사항

가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 준수

나.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사고 예방 대책 수립

다. 행사 관련 보험 가입 의무

라.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준수

5. 성과물 제출

- 가. 계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: 세부 실행계획서 제출
- 나. 행사 종료 후 12월 15일까지: 정산 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
- 다. 모든 산출물 및 성과물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

Ⅲ 과 업 수 행 지 침

1. 일반 지침

- 가. 본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구사항, 기본방향, 예산 등 제안서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.
- 나.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,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.
- 다. 설계는 예술성, 창작성, 통일성, 심미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.
- 라.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, 기계, 전기(조명), 통신, 소방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법규를 면밀히 검토, 준수하여야 하며, 누락분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수행자가 보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.
- 마.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바.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성과품이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된다고 발주처가 판단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자는 이를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.
- 사. 건축, 소방 등 기본적인 법규를 기반으로 전시물과 공간을 설계하고,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「어린이놀이시설

안전 관리법」, 「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」, 「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」, 「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」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.

- 아. 사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처
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
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은 없다.
- 자.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
다. 특히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
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, 경미한 사항에
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
우, 사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에
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차.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
하며,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
따른다.
- 카. 사업 수행자는 전시설계·제작·설치기간 중 시설의 유지 관리,
화재 및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, 소속
직원의 부주의·고의로 인한 제반사고 발생 시 민·형사상 손해
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.

2. 세부 지침

가. 공통사항

- 1) 모든 전시관련 자료(영상비디오, 필름, 사진, 데이터, 그림, 실물 등)
의 확보(촬영, 구매, 임대, 지급 등)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, 저작

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수행자는 반드시 특허권,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상호 각각의 사업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
- 2) 추락, 파손, 안전사고 등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전시·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3)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, 발주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·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4) 전시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 청소를 하여야 한다.
- 5) 사업수행자는 공사 수행에 있어서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,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아울러,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, 도난, 유실, 손상과 사업수행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- 6) 사업수행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물을 설계하고 제작·설치하여야 한다. 감독관으로부터 재제작·설치, 제작·설치 중지 명령,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7) 사업수행자는 계약 조건에 위배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, 만약 발주처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. 이로 인하여 발행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

여야 한다.

- 8)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제작·설치하여야 한다.

나. 전시 시설(물) 세부 사항

- 1) 전시관 출입구 및 통로의 폭은 전시물의 이동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2)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전시물의 경우 전기용량, 하중, 급·배수시설, 기타 특수 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해야 한다.
- 3) 임산부, 노약자, 장애인,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전시 및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.
- 4) 내부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 관련 법규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설관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.
- 5) 전시유도 동선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6)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·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7) 설계 및 제작 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처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,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수행자는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.
- 8) 기타 효율적인 전시 제작·설치·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고려한다.

다. 전시 연출 및 전시물 제작

- 1) 전시물은 전시주제가 잘 반영되도록 하고, 전시물(그림책, 설치물, 영상 등)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연출한다.

- 2) 연출 체험물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소음, 진동 및 관람객의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,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제작하고 관람객의 행동반경, 동선, 대기열 등을 고려하여 공간 배치하여야 한다.
- 3) 전시품 및 전시 공간은 발주처에서 제안한 것외의 다양한 제안이 가능하다.

라. 강연 및 포럼 세부 사항

- 1) 강연 및 포럼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매개로 한 지식 공유, 창작 교류, 시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2) ‘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’ 및 ‘그림책 대표 도시’ 원주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국내·외 작가, 전문가, 시민이 함께하는 교류형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야 한다.
- 3) 단순 강연 형식을 지양하고, 대담·토론·참여형 포럼 등 다양한 형식의 도입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4) 기타 강연 및 포럼 관련하여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.

마. 사인물(전시패널 및 각종 안내 사인물)

- 1) 사인물은 시각적 전달체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,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, 시설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고려해 제작·설치해야 한다.
- 2) 전시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3) 전시물 설명문의 경우 관람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4)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사업수행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

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한다. 또한 사업수행자는 반드시 특허권, 저작권, 초상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- 5) 전시물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바. 저작권

- 1) 전시에 사용되는 연출 방법, 영상, 그림, 이미지 등 저작권,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사업수행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2) 제3자의 소유권 및 저작권, 초상권을 침해하는 원본의 도용 등으로 발주처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, 그 책임은 모두 사업수행자에게 있다.
 - 이 경우 사업자는 피해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,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간 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고, 이에 소요된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.

사. 법령 등의 적용 기준

- 1) 본 과업의 결과물은 전시 및 전시물 제작·설치에 관련된 모든 법규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2) 계획(안) 제출 시 관련 법규를 검토해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3. 보안 지침

가.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 항목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,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나.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- 다.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사업 수행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
- 라.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보안 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.
- 마.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모든 성과품에 소유권과 저작권, 특허권, 지적 재산권은 발주처가 갖는다.

4. 용역 공정 변경 조건 및 중지

- 가.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
- 나. 기타 천재지변이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다. 수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·허가, 승인에 따른 기간의 소요 관계,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